

[자료 9]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(지방세법 제11조, 제28조)

[2014년 개정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표]

종 류		구 분	취득세	농특세	교육세	합 계	적용시점
주택 (유상 취득)	6억 이하	85 m² 이하	1.0%	-	0.1%	1.1%	
		85m² 초과	1.0%	0.2%	0.1%	1.3%	
	6억 초과 9억 이하	85 m² 이하	2.0%	-	0.2%	2.2%	[시행] 2014. 1. 1.
		85m² 초과	2.0%	0.2%	0.2%	2.4%	[소급적용] 2013. 8. 29.
	9억 초과	85 m² 이하	3.0%	-	0.3%	3.3%	
		85m² 초과	3.0%	0.2%	0.3%	3.5%	
주택 외 유상취득		-	4.0%	0.2%	0.4%	4.6%	
농지의 유상취득		-	3.0%	0.2%	0.2%	3.4%	
원시취득(신축)		-	2.8%	0.2%	0.16%	3.16%	[시행]
상속으로 인한 취득		농지	2.3%	0.2%	0.06%	2.56%	2011. 1. 1.
		농지 외	2.8%	0.2%	0.16%	3.16%	
중여에 의한 취득		-	3.5%	0.2%	0.3%	4.0%	

[※]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, 감산, 감면되는 경



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2014년 개정 현행 등록면허세율표]

구 분	등 기	유 형	기본세율	비고	기타
부동산	소유권 :	보존등기	8/1,000		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의 20/100
	소유권의	유상	20/1,000		
	이전등기	무상	15/1,000		
			(상속 8/1,000)		
	소유권이외의 물	물권과 임차권의	2/1,000	산출금 세액이 6,000원 미만일 때에는 6,000원임	
	설정 및 이전				
	1 지상권 : 부동	산가액 기준			
	2. 저당권 : 채권	금액 기준			
	3. 지역권 : 요역	지가액 기준			
	4. 전세권 : 전세	금액 기준			
	5. 임차권 : 월 9	임대차금액 기준			
	경매신청・가압취	루・가처분			
	(채권금액 기준)			
	가등기(부동산가	액 기준)			
	기타(변경,	경정, 말소)	건당 6,000원		

- ※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, 감산,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●●●분류표시 : 소송실무자료